

의안번호	제 70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 
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기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4월 일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일  
발 의 자 : 김기창, 서동학, 박우양,  
연철흙, 전원표, 황규철,  
연종석

### 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, 협의회 구성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중 “지역” 명칭을 삭제함
- 나. 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협의회 위원 구성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  - 위촉직 위원 위촉조항 신설, 간사 직급 상향조정, 연임규정 신설 등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4. 5. ~ 2021. 4. 12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 전담기구”를 “전담기구”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협회의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7조 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중전의 제2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2조)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
4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중전의 제3조)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은 충청북도” 를 “당연직 위원은 도” 로,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 을 “재난관리책임기관(도교육청 및 각 시·군, 지방공기업)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업무 담당사무관” 을 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공공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장
2.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

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도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<u>지역 전담기구</u>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2조(협회의 기능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담기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협회의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3조(협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

의회(이하“전담기구 협의회”라 한다)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·2. (생략)
3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설>
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,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충청북도 감사관 및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(이하 “안전감찰 업무”라 한다)를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

4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-----

③ ----- 당연직 위원은 도 -----  
----- 재난관리책임기관(도교육청 및 각 시·군, 지방공기업)-----

담당(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)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<신 설>

제4조 (생략)

제5조(실무협의회) ① (생략)

② 실무협의회는 충청북도 안전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공공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장

2.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-----  
-----.

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
제6조(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도 -----

정책부서장이 주재하며,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(생략)

제6조 ~ 제9조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 ~ 제10조 (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86조의2(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(이하 “전담기구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·활동 등의 협조
  2.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
  3.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.
-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.
-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